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

상품요약서

※ 모바일방카채널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상품명을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e)'로 합니다.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은 치매(중증치매, 중등도치매, 경도치매) 및 루게릭병을 보장하는 치매보장형과 장해(50%이상 장해, 60%이상 장해, 80%이상 장해)를 보장하는 장해보장형을 선택하여 가입가능한 비갱신형 보험으로 최대 11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Q :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이란 무엇인가요?

A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은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반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 상품” 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일반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일반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Q :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의 “일반형”이란 무엇인가요?

A : “일반형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과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산출한 상품입니다.

Q :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의 치매상태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에 있어서 ‘치매상태’라 함은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결과가 1점에 해당되는 경우는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경도치매)’, 2점에 해당되는 경우는 ‘중등도의 인지기능 장애(중등도치매)’, 3~5점에 해당되는 경우는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중증치매)’로 나뉩니다. ‘치매상태(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치매관련 전문가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Q :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에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은 어떻게 되나요?

A :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에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며,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해당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됩니다.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에서 ‘경도이상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에서 ‘경도이상치매상태’라 함은 위 질문 중 ‘중증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경도치매상태’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상태를 말하며, ‘중등도이상치매상태’라 함은 위 질문 중 ‘중증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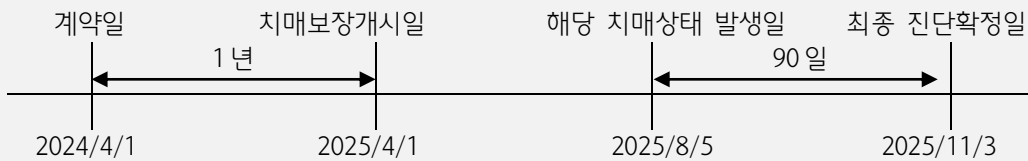
Q :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은 납입면제가 되나요?

A :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 장애보장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 치매보장형의 경우,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Q :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의 보장개시일은 언제부터인가요?

A :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의 보장개시일은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다만, ‘치매상태’ 관련 급부에 관한 보장개시일은 치매보장개시일이라하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치매관련 급부는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종 진단확정합니다.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되거나 최종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치매상태의 보장개시 및 진단확정(예시)】



다만, 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Q :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연금전환특약」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계약자가 이 계약을 연금으로 전환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연금전환시점에 회사에서 적용하는 연금 전환특약을 통하여 계약을 전환해 드립니다. 연금전환시점의 연금전환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최초에 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연금전환특약과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와 적용기초율[연금사망률, 계약관리비용, 전환당시 산출 기준에 따른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A :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II.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종류

- 보장성보험
- 개인형
- 치매보장형/장애보장형

명칭	세목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	치매보장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장애보장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유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치매보장형	90세 만기	5/7/10/15/20년납	20세 ~ 70세	20세 ~ 70세	월납/ 6개월납/ 연납
	100세 만기	5/7/10/15/20년납	20세 ~ 75세	20세 ~ 75세	
	110세 만기	5/7/10/15/20년납	20세 ~ 75세	20세 ~ 75세	
장애보장형	90세 만기	5/7/10/15/20년납	0세 ~ 70세	0세 ~ 70세	
	100세 만기	5/7/10/15/20년납	0세 ~ 75세	0세 ~ 75세	
	110세 만기	5/7/10/15년납	0세 ~ 75세	0세 ~ 75세	
		20년납	0세 ~ 73세	0세 ~ 75세	

나. 일반형

유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치매보장형	90세 만기	3/5/7/10/15/20년납	20세 ~ 70세	20세 ~ 70세	월납/ 6개월납/ 연납
	100세 만기	3/5/7/10/15/20년납	20세 ~ 75세	20세 ~ 75세	
	110세 만기	3/5/7/10/15년납 20년납	20세 ~ 75세 20세 ~ 74세	20세 ~ 75세 20세 ~ 75세	
장애보장형	90세 만기	3/5/7/10/15/20년납	0세 ~ 70세	0세 ~ 70세	
	100세 만기	3/5/7/10/15/20년납	0세 ~ 75세	0세 ~ 75세	
	110세 만기	3/5/7/10/15년납	0세 ~ 75세	0세 ~ 75세	
		20년납	20세 ~ 72세	0세 ~ 75세	

3. 가입한도

치매보장형 보험가입금액 : 최고 1,000만원

장해보장형 보험가입금액 : 최고 7,000만원

※ 다만, 기존에 가입한 보험가입내용, 가입나이 등에 따라 가입한도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4.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III.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	(주계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제도성특약)
+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연금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연금전환특약의 연금액은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전환시의 기초서류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아래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가. 주계약(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

[치매보장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치매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1,000 만원
중등도이상치매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1,000 만원
경도이상치매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1,000 만원
중증치매 간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매월 중증치매간병비 지급해당일 : 150 만원(84 회 확정지급)
중등도이상치매 간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매월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 지급해당일 : 150 만원(84 회 확정지급)
루게릭병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루게릭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진단확정시 50%지급)	2,000 만원

(주)

1. 피보험자가 납입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이 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4. '중등도이상치매상태'라 함은 '중증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5. '경도이상치매상태'라 함은 '중증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등도 이상치매진단자금 및 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자금, 중등도이상치매진단자금 및 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경도 이상치매진단자금 또는 중등도이상치매진단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증치매 간병비,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를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9. 매월 중증치매간병비 지급해당일은 매월 도래하는 중증치매간병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에 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발생 해당일로 봅니다.
10. 매월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 지급해당일은 매월 도래하는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에 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발생 해당일로 봅니다.
11. 중증치매간병비 또는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를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해보장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50%이상 장해간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 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5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50%지급)	매월 50%이상 장해간병비 지급해당일 : 20 만원 (120 회 확정지급)
60%이상 장해간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 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6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50%지급)	매월 60%이상 장해간병비 지급해당일 : 80 만원 (120 회 확정지급)
고도장해간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 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50%지급)	매월 고도장해간병비 지급해당일 : 80 만원 (120 회 확정지급)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 80%미만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50%이상 장해간병비

및 60%이상 장해간병비를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50%이상 장해간병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50%이상 장해간병비, 60%이상 장해간병비, 고도장해간병비를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50%이상 장해간병비 또는 60%이상 장해간병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50%이상 60%미만 장애상태	60%이상 80%미만 장애상태	80%이상 장애상태
50%이상 장해간병비	지급	지급	지급
60%이상 장해간병비	해당없음	지급	지급
고도장해간병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5. '매월 50%이상 장해간병비 지급해당일'은 매월 돌아오는 50%이상 장해간병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6. '매월 60%이상 장해간병비 지급해당일'은 매월 돌아오는 60%이상 장해간병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7. '매월 고도장해간병비 지급해당일'은 매월 돌아오는 고도장해간병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나. 특약(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연금전환특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 연금	중신 연금 (개인 연금형)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 보충기간: 10년, 20년,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
	상속 연금형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1 차년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1년전으로 할인한 금액에 대한 1년간의 이자액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 2 차년도 이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1 차년도 연금액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원금으로 매 지급시점 직전 1년간의 이자액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매 지급시점 직전 1년간의 공시이율을 적용) *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연금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음
연금	확정 연금형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 5년, 10년, 15년, 20년

(주)

1.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및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

약자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인출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생존연금 및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 및 연금도 변경됩니다.
3.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생존연금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동안 연금지급개시후에 생존연금지급을 보증하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8.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9. 생존연금 및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0.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11. 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치매보장형의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되거나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규정은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보험계약의 무효관련 사항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송납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 드립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보나, 상기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치매보장형에 한함)

다.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라.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내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V.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 할인을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보험기간 10년 이내 연복리 3.25%, 10년 초과 연복리 2.25%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 적용위험율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치매보장형				장애보장형			
	무배당 예정 중증치매발생률		무배당 예정 중등도이상치매발생률		생명보험 참조순보험 요율2의 50%이상 질병장애발생률		생명보험 참조순보험 요율2의 60%이상 질병장애발생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세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1	0.000010	0.000010	0.000008	0.000005
40세	0.000001	0.000008	0.000007	0.000027	0.000055	0.000019	0.000033	0.000010
60세	0.000088	0.000251	0.000361	0.000715	0.000830	0.000320	0.000492	0.000187

3. 적용해지율

Q : 적용해지율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해지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에 적용한 해지율은 0%~15.5%이며, 일반형에는 적용해지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V.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Top3 VIP 안심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VI.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우리 하나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1) 치매보장형

① 남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40세, 90세 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713,100	0	0.00%	777,000	0	0.00%
6개월	1,426,200	0	0.00%	1,554,000	0	0.00%
9개월	2,139,300	223,282	10.44%	2,331,000	446,564	19.16%
1년	2,852,400	621,093	21.77%	3,108,000	1,242,186	39.97%
2년	5,704,800	2,258,886	39.60%	6,216,000	4,517,771	72.68%
3년	8,557,200	3,944,979	46.10%	9,324,000	7,889,957	84.62%
4년	11,409,600	5,681,171	49.79%	12,432,000	11,362,343	91.40%
5년	14,262,000	7,468,964	52.37%	15,540,000	14,937,929	96.13%
10년	28,524,000	16,824,700	58.98%	31,080,000	33,649,400	108.27%
15년	42,786,000	26,287,600	61.44%	46,620,000	52,575,200	112.77%
19년	54,195,600	34,609,350	63.86%	59,052,000	69,218,700	117.22%
20년	57,048,000	73,594,000	129.00%	62,160,000	73,594,000	118.39%
30년	57,048,000	89,237,000	156.42%	62,160,000	89,237,000	143.56%
40년	57,048,000	91,759,800	160.85%	62,160,000	91,759,800	147.62%
50년	57,048,000	0	0.00%	62,160,000	0	0.00%

② 여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40세, 90세 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606,000	0	0.00%	660,000	0	0.00%
6개월	1,212,000	0	0.00%	1,320,000	0	0.00%
9개월	1,818,000	191,675	10.54%	1,980,000	383,350	19.36%
1년	2,424,000	529,500	21.84%	2,640,000	1,059,000	40.11%
2년	4,848,000	1,918,350	39.57%	5,280,000	3,836,700	72.66%
3년	7,272,000	3,347,150	46.03%	7,920,000	6,694,300	84.52%
4년	9,696,000	4,817,900	49.69%	10,560,000	9,635,800	91.25%
5년	12,120,000	6,331,850	52.24%	13,200,000	12,663,700	95.94%
10년	24,240,000	14,241,300	58.75%	26,400,000	28,482,600	107.89%
15년	36,360,000	22,201,450	61.06%	39,600,000	44,402,900	112.13%
19년	46,056,000	29,149,400	63.29%	50,160,000	58,298,800	116.23%
20년	48,480,000	61,929,600	127.74%	52,800,000	61,929,600	117.29%
30년	48,480,000	73,221,800	151.04%	52,800,000	73,221,800	138.68%
40년	48,480,000	69,873,200	144.13%	52,800,000	69,873,200	132.34%
50년	48,480,000	0	0.00%	52,800,000	0	0.00%

(2) 장애보장형

① 남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40세, 90세 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886,500	0	0.00%	943,200	0	0.00%
6개월	1,773,000	0	0.00%	1,886,400	0	0.00%
9개월	2,659,500	0	0.00%	2,829,600	0	0.00%
1년	3,546,000	141,064	3.98%	3,772,800	282,129	7.48%
2년	7,092,000	2,155,779	30.40%	7,545,600	4,311,557	57.14%
3년	10,638,000	4,226,293	39.73%	11,318,400	8,452,586	74.68%
4년	14,184,000	6,354,407	44.80%	15,091,200	12,708,814	84.21%
5년	17,730,000	8,541,771	48.18%	18,864,000	17,083,543	90.56%
10년	35,460,000	19,633,200	55.37%	37,728,000	39,266,400	104.08%
15년	53,190,000	30,517,800	57.38%	56,592,000	61,035,600	107.85%
19년	67,374,000	39,995,250	59.36%	71,683,200	79,990,500	111.59%
20년	70,920,000	84,936,600	119.76%	75,456,000	84,936,600	112.56%
30년	70,920,000	98,967,000	139.55%	75,456,000	98,967,000	131.16%
40년	70,920,000	98,893,200	139.44%	75,456,000	98,893,200	131.06%
50년	70,920,000	0	0.00%	75,456,000	0	0.00%

② 여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40세, 90세 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556,200	0	0.00%	586,800	0	0.00%
6개월	1,112,400	0	0.00%	1,173,600	0	0.00%
9개월	1,668,600	0	0.00%	1,760,400	0	0.00%
1년	2,224,800	0	0.00%	2,347,200	0	0.00%
2년	4,449,600	1,144,029	25.71%	4,694,400	2,288,057	48.74%
3년	6,674,400	2,452,393	36.74%	7,041,600	4,904,786	69.65%
4년	8,899,200	3,796,607	42.66%	9,388,800	7,593,214	80.88%
5년	11,124,000	5,177,871	46.55%	11,736,000	10,355,743	88.24%
10년	22,248,000	12,082,200	54.31%	23,472,000	24,164,400	102.95%
15년	33,372,000	18,831,000	56.43%	35,208,000	37,662,000	106.97%
19년	42,271,200	24,739,200	58.52%	44,596,800	49,478,400	110.95%
20년	44,496,000	52,571,100	118.15%	46,944,000	52,571,100	111.99%
30년	44,496,000	60,417,000	135.78%	46,944,000	60,417,000	128.70%
40년	44,496,000	46,980,300	105.58%	46,944,000	46,980,300	100.08%
50년	44,496,000	0	0.00%	46,944,000	0	0.00%

(주)

1.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 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상기 해약환급금은 당해 보험년도 말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3. 경과년도와 보험료납입기간(년수)이 동일한 시점(예를 들어 주계약 납입기간이 20년인 경우 경과년도 20년 시점)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 직후 연계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예시됩니다. 따라서 연계계약해당일 도래 전 해지시 예시된 해약환급금 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Ⅶ. 보험가격지수

Q : 보험가격지수란 무엇인가요?

A :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 : 40세, 월납]

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무)Top3 VIP 안심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_치매보장형	50	20	104.5%	103.9%	1,000
(무)Top3 VIP 안심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_장해보장형	50	20	96.6%	98.4%	3,000
(무)Top3 VIP 안심보험 (일반형)_치매보장형	50	20	94.0%	93.6%	1,000
(무)Top3 VIP 안심보험 (일반형)_장해보장형	50	20	89.6%	90.5%	3,000